# 긴급복지지원

# 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요 (긴급복지지원)

긴급복지지원은 법률에 의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.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합니다.

#### (1)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 ① 위기사유와 ②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다만,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생계급여,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외국인이라도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,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 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, ③ 난민법에 따른 따른 난민, ④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, 범죄, 천재지변으로 피 해를 입은 사람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사유

-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 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副所得者)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, ② 단전된 때,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,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, ⑤ 사각지대발굴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,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
#### ② 소득과 재산 기준은 이렇습니다

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원/월	1,671,33	42,761,95	73,535,99	24,297,43	45,021,80	15,713,777

<sup>\* 7</sup>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72,468원씩 증가

#### (3) 재산기준

- (재산의 합계액)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기준금액(만원)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)	24,100 (~31,000)	15,200 (~19,400)	13,000 (~16,500)

<sup>\*</sup>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란? :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거용 재산 중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 주 주택 1개소의 경우 기준금액에 더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내에서 공제 가능

#### - (금융재산)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이하

(단위 : 천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금융재산 금액	8,228	9,682	10,714	11,729	12,695	13,618
금융재산 금액(주 거)	10,228	11,682	12,714	13,729	14,695	15,618

<sup>\* 7</sup>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,000원 추가

## (2)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생계지원

(원/월)

가구구성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713,100	1,178,400	1,508,600	1,833,500	2,142,600	2,437,800

※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 지급

의료지원 한도액: 300만 원 이내

주거지원 한도액

(원/월)

지역 & 가구원 수	1 ~ 2인	3 ~ 4인	5 ~ 6인
대도시	387,200	643,200	848,600
중소도시	290,300	422,900	557,400
농어촌	183,400	243,200	320,300

#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

(원/월)

입소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535,900	914,200	1,182,900	1,450,500	1,719,200	1,987,700

# 교육지원 금액

(원/분기)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지원금액	124,100	174,700	207,700원 및 수업료 · 입학금

# 그 밖의 지원 금액

(원/월)

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
----------------------

지원종류	연료비	해산비	장제비	전기요금
지원금액	150,000	700,000	800,000	500,000 이내

### (3)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실직, 휴.폐업, 질병.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.군.구청,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①"복지로" 홈페이지 '서비스 신청→저소득층→생계급여, 주 거급여, 교육급여, 장제급여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②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③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.